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16 선고 2018가단41342 판결 [매매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판결 선고 2018. 11. 16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86, 469, 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. 10. 22.부터 이 사건 소장
부분송달일까지는 연 2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라.

이 유

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,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,예외적으로,확정판결에 기한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5다74764판결 등 참조).

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70014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제기하여 2010. 12. 21. "피고는 원고에게 86,469,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. 10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"는 판결(이하 '이 사건판결'이라 한다)을 선고받았고,이 사건 판결이 2011. 1. 11.경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1. 1. 11.경 이후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,이 사건소를 제기한 2018. 7. 9.에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고,달리 시효연장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.

그렇다면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지영